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달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186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:김달호, 권수정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평남, 김혜런, 문장길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아량, 이광호, 이상훈, 이태성, 임종국, 전석기, 최 선, 최정순. 한기영 의원(20
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, 시 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, 청소년과 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이에,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, 시구 합동정비 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, 오히려 불법광고 물은 증가(25만 5천건(2019) → 31만 2천건(2020))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 매년 정기적인 시·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,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·구청장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기적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근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제2항).
- 나. 광고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28조제3항).

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·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,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,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	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
제거 등) ① (생 략)	제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・구청장은 도시경관
	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
	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
	야 하며, 매년 정기적으로 불
	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
	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	에는 광고물 실명제, 불법광고
	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
	<u>할 수 있다.</u>
②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
# 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김달호 의원 담 당 : 조도형 과장

여차민 정책조사팀장 윤지민 예산분석관

접 수 일: 2021.02.01

회 신 일 : 2021.02.02 내용문의 : 02-2180-7945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첚부 사유
- 4. 작성자

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제2항~제3항 신설에 따른 불법광고물 합 동점검 시행비용, 광고물 실명제・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발생
  - 안 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제2항에 따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시행비용은 서울시에서 기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(기 추진사업 내용 붙임 참고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≒44,550천원
-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44,550천원으로 연평균 8,91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, 비용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비용발생
  -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업인 시민소통기획관의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 중 '옥외광고물 실태조사'내용을 준용 하여 추계, 2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 - ※ 2021년 예산서 기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'옥외광고물 실태조사' 비용은 14,850천원이며, 격년으로 사업 시행 중
  - 물가상승률 미만영

#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 ≒ 44,550천원(연평균 8,910천원)
  - 총비용 =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
    - = 44,550천원

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(안 제28조제3항)	14,850	-	14,850	-	14,850	44,550
	소계(b)	14,850	-	14,850	-	14,850	44,550
	□ 총 비용(b-a)	14,850	-	14,850	-	14,850	44,550

- $\bigcirc$  광고물 실명제  $\cdot$ 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=44,550천원
  -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

= 14,850천원 × 3회

= 44,550천원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윤지민

**28** 02-2180-7945

e-mail: yjm1030@seoul.go.kr

## [붙임]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 (주관 부서)	2021년 예산	사업 내용	관련 조항
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(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)	1,212,000	-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·시업비: 762,000천원 - 불법현수막 기동반 용역비 ·관련근거: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ㆍ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(시ㆍ도지사와 시 장등의 합동점검 절차) ·시업기간: 2021.1.~12.(연례반복, 계속시업) ·시업비: 450,000천원 ·시업내용: 시ㆍ구 합동점검반 일정과 연계하 여 25개 자치구 불법현수막 점검ㆍ정비 ·정비반 구성: 3개팀(각 팀별 용역원 3명 + 시ㆍ구 직원 1명), 불법현수막 정비 시 관할구 청 입회하에 실시 ·운영방법: 3개팀 일일 6개 자치구 점검, 점검 주기 자치구별 4일	안 제28조(불법 유동광 고물 방지 및 제거 등) 제2항

자료: 2021년 서울시 예산(안) 사업별설명서